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4.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기재부 등 10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4.5월 현재 18개 부처에서 총 91개 부담금을 운용 중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등 2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해당 없음

#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장 기획재정부 소관

제1조(「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조업자는"으로, "행하게 하거나"는 "행하거나"로 한다.

제2조(「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제13호의2·제22호·제24호·제27호·제28호·제32호·제33호·제38호·제44호·제53호·제71호·제72호·제75호·제78호·제80호·제88호·제91호·제9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70호 및 제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74.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제2장 교육부 소관

제3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5항제3호"를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5조의4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3장 외교부 소관

제4조(「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한다.

#### 제4장 행정안전부 소관

제5조(「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수료·분담금·지방세"를 "수수료·지방세"로 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각각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중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한다.

제178조제2항 중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한다.

##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6조(「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4조의 제목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이용자 분담금·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를 "유지·관리"로 한다.

제7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8조(「광업법」의 개정)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9조(「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요금감면이나"를 "요금감면이나 공급시설 건설비

용의 분담 등"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요금"을 "요금과 분담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이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담금 및 연체료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고시요금"을 "고 시요금과 분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를 "제17조" 로, "제17조의 공급규정"을 "공급규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 제7장 보건복지부 소관

제10조(「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841원"을 "846원"으로 한다.

## 제8장 환경부 소관

제11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제30조의4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보전·관리"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0조의3"을 "제30조의3 및 제30조 의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보전·관리"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의2에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먹는샘물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① 시·도지사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하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 ③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30조의5(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30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6(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를 "제46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7호"로,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 제9장 국토교통부 소관

제15조(「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7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 제10장 해양수산부 소관

제20조(「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21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해운법」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관한 적용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 지사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 지부담금특별회계 잔액(법 제5조의4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용 지부담금 특별회계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정수 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중인 기금에 예치한 재원을 포함한다)을「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용지확보기금의 설치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 쟁송이 진행중인 경우 쟁송 완료 후 1개월 이내 학교용지확보기금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학교용지확보기금으로 이관한 이후에 발생되는 쟁송에 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원처분청이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제4조(존치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승인되어 고시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운법」제22조의2에 따라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70호를 삭제한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삭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	참여) ① <u>제조업자는</u> 보건의료·환경
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등의 사업을 직접 <u>행하거나</u> 이들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u>바에 따라</u>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	
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	
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부담금(제3조 관련)
8.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	<u>&lt; 삭제 &gt;</u>
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9.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	<u>&lt; 삭제 &gt;</u>
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11.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u>&lt; 삭제 &gt;</u>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	
급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u>&lt; 삭제 &gt;</u>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	
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u>&lt; 삭제 &gt;</u>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u>&lt; 삭제 &gt;</u>
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의 일시부담금	
24.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u>&lt; 삭제 &gt;</u>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	
을 위한 출연금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u>&lt; 삭제 &gt;</u>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28.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u>&lt; 삭제 &gt;</u>
원인자 부담금	
3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u>&lt; 삭제 &gt;</u>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u>&lt; 삭제 &gt;</u>
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삭제 >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	
담금	
44.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u>&lt; 삭제 &gt;</u>
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u>&lt; 삭제 &gt;</u>
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	
급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의 재	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
활용부과금	전자제품의 재활용ㆍ회수부과금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u>&lt; 삭제 &gt;</u>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7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 삭제 >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 '0'''	

수익자 분담금	
74. 「지하수법」 <u>제30조의3</u> 에	74. 「지하수법」 <u>제30조의3 및</u>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u>제30조의4</u> 에 따른 지하수이용
	부담금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	<u>&lt; 삭제 &gt;</u>
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	
설 건설비용 부담금	
78.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u>&lt; 삭제 &gt;</u>
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u>&lt; 삭제 &gt;</u>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	
지부담금	
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	<u>&lt; 삭제 &gt;</u>
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	
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91.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	<u> &lt; 삭제 &gt;</u>
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9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u> </u>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	
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u>&lt;삭 제&gt;</u>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	
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	
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	
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	
<u>다.</u>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 <u>(제5조제5항제3호</u> 에 해	<u>(「노인복지법」제32조</u>
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	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
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	<u>택</u>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	

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 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 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 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생 략)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 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제 부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② (현행과 같음)
③
시 • 도지사
협의할 수 있다.
4·⑤ (현행과 같음)
(1) (1) (1) (1) (1) (1) (1) (1) (1) (1)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 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 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 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
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

<삭 제>

⑥ ~ ⑧ (현행과 같음) <산 제> 는 경우

-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
  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 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 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 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내역 등

- 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 다.

하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 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 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
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
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14

<u><삭 제></u>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 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

 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

<삭 제>

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 리·운용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 수하는 부담금
-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가산금
-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 로 정하는 재원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경비
-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 되는 비용
-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 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 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
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 7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u>3. 삭제</u> 4. 삭제 <u><삭 제></u>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 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 제9조(권한의 위임) <삭 제> 사는 그 시 · 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 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업무 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의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4
사용료 <u>·수수료·분담금·지</u>	<u>•수수료•지방세</u>
<u>방세</u>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u>&lt;삭 제&gt;</u>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	
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	
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u>수 있다.</u>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①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	
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	
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로 <u>사용료 또는 수수료의</u>
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	
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	
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	
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②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①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u>	④ <u>사용료 또는 수수료의</u>
쿠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세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	
<b>)</b>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사용료・</u>	⑦ <u>사용료</u>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	또는 수수료를
가 납부기한까지 그 <u>사용료·수수</u>	<u>사용료 또는</u>
로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수수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세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	②
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u>사용료·수수료 또</u>	<u>사용료 또는 수수료</u>
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	를
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	부담금) <u>① &lt;삭 제&gt;</u>
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u>할 수 있다.</u>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② <삭 제>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u>&lt;삭 제&gt;</u>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	
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	
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	
<u>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u>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	
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	
른다.	
∥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	제65조(강제징수) ①
라 이용자 분담금 • 원인자 부담	<u>유지 • 관리</u>
<u>금 또는 유지·관리</u>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	
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	
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했 개 정 안 형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제24조(기금의 조성)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 3. <삭 제> 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 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 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

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 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 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화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 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 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 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 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 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 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 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화진홍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 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 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해		개	정	ộ}	
			۵`	긴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	<u>&lt;삭</u>	제>			
부과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					
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					
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					
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					

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 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 된다.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 <삭 제> 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 관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중 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 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 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산	제17조(공급규정) ①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요금, <u>요금감면이나</u> 그	요금감면이나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등 -
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	,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	
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	
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u>&lt;신 설&gt;</u>	②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
	의 분담이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담금 및 연
	체료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
	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	<u>③</u>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고시한 <u>요금</u> 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③</u> ~ <u>⑤</u> (생 략)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 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 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 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 ·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2. (생 략)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 3. 제17조제3항-----상자원부장관의 고시요금 상

요금	과 분담금-
<u>④</u> ~ <u>⑥</u> (현행 제3	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1. • 2. (현행과 같음)

-------고시요금과 분담

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4.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 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 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 담하게 할 때

5. • 6. (생략)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 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 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 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 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 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 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 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7조(벌칙) -----

글
4. 제17조
<u>공급규정</u>
5.・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u>제17조</u>

②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 2. 제17조제5항 -----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 2. 제17조제4항----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 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3.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
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	과·징수 등) ①
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	
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	
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	
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	
수한다.	,
1. 궐련: 20개비당 <u>841원</u>	1 <u>846원</u>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	<삭	제>			
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					
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					
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					
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					
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					
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					
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					
<u>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u>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					
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					
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					
<u>정·부과할 수 있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u>징수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 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 <삭 제> · 부과의 취소 · 변경 및 반화)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 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 다)이 결정 · 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그 결정·부과를 취 소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 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 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 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 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 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

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 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 자부담금등의 결정 · 부과를 변경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 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 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渦誤納)된 수익자부담 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 의 결정 · 부과가 취소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 의 결정 • 부과가 변경되어 수익

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 <삭 제> 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제23 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 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 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 른다.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제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 • 가

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 여야 하다.

1. (생 략)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3. • 4. (생략)

②·③ (생 략)

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	수) ①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형 개 정 안 제26조(수입신고 등) ①~④ (생 제26조(수입신고 등) ①~④ (현 량) 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⑤ ----- 「지하수법」제30조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 의4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 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 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삭 제>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 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 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 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 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 다.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 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 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 색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 인자부담금
-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

- 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 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 문의 세출
-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 · 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정수한다. 이 경우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 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 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 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

-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 8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 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
   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
   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
   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 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 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 | <삭 제> 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 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 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 다)에 따른다.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 <삭 제>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 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 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 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 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 하여 내게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 는 경우
-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 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 우
-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 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 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 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

- 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 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 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 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 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삭 제>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 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 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 징 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설치 등) ①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	
정한 개발ㆍ이용과 <u>보전ㆍ관리</u>	<u>보전·관리</u>
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	및 먹는물 수질관리
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	②
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0조의3</u> 에 따른 지하수이	2. <u>제30조의3 및 제30조의4</u>
용부담금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	4
도로 사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지하수의 <u>보전 · 관</u>	10 <u>보전·관</u>
<u>리</u>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② (생 략) 부과·징수) ①·② (현행과 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 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u>아니하</u> 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u>이 경우</u>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정 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 용한다.

⑤·⑥ (생 략) <u><신 설></u>

으 )	
3	-
	-
	_
	-
<u>대통령령으</u>	-
<b>4</b>	_
	-
	-
<u>아니하</u> 다	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남	<u></u>
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u>카</u>
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u>5</u>
단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세30조의4(먹는샘물등에 대한 >	<u>र</u> ]
<u>하수이용부담금)</u> ① 시·도지시	<u>}</u>
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	카
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기	
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제	9
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_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약	
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지하수	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먹 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 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 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 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 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과·징수한다.

-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 을 평균한 금액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
   른 물이용부담금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따른물이용부담금

-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 용부담금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 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 보전 부문의 세출
- ③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 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 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 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 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 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신 설> 기한의 다음 남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 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7)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 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 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8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야 하다. 제30조의5(부담금에 대한 이의신

청 특례) ① 제30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 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경 부렁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 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6(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

는 시·군·구청장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 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 이 있는 경우
-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 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 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미리 그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한다.

-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 또는 시· 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 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제46조(회계의 세입)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4. <u>&lt;</u> 삭 제>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	
5. ~ 25. (생 략)	5. ~ 25. (현행과 같음)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	<u>제46조제7호</u>
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	
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	
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	
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	
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	
0호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	

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 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 4호의 화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 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 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하다.

- 1. 2. (생 략)
- 2의2. 삭 제
-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 | <삭 제> 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 4. ~ 18. (생 략)
- ②・③ (생 략)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 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배출부과금·총량초과 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 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2. (현행과 같음)				

- 4. ~ 18.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같은 조 제7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 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 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 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 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 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 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 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공공폐수처리시설</u>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u>&lt;</u> 삭 제>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	
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u>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u>&lt;삭 제&gt;</u>
<u>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u>&lt;삭</u>	제>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					
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					
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					
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					
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					
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					
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					
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					
<u> 담시킬 수 있다.</u>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 방자치단체의 장,「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
-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

   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

   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 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	< <u>삭</u>	제>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u>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					
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u>할</u>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설 부담) ① (생략)	제33조(시설 부담) ① (현행과 같
	<u>○</u>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	<u>&lt;</u> 삭 제>
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	
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u>을 내게 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	<u>&lt;삭 제&gt;</u>
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	
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	
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	
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	
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	
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	<u>&lt;삭 제&gt;</u>

 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

 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

 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 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	<u>&lt;</u> 삭 제>
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	
<u>부를 내게 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u>&lt;</u> 삭 제>
<u>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생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	②
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	
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u>다</u>	
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	<u>서 삭제&gt;</u>
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	<u>&lt;삭 제&gt;</u>
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	
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u>부과·징수할 수 있다.</u>	
1.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	
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	
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u>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u> 은 자
- 3.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 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 4.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 5.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 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 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 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

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
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함하다)

-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 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양식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u>으로서</u> 「공유수면 관리 및 <u>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u>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기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 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 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	
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	
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10</u> .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	<u>&lt;삭 제&gt;</u>
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	
<u>를</u> 판매한 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u>&lt;삭 제&gt;</u>
부과·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	
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	
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	
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	
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 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 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 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 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 과・징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 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 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

한 사업

-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위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 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图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 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 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 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 <u><삭 제></u>

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 일 이내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

<u><삭 제></u>

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 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표 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 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삭 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 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 추지 못한 때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 제52조(청문) ------

는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2 (생 략)
- 3.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삭 제> 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 2의2. (생 략)
- 3.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삭 제>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 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 를 제조한 자
- 4.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 | <삭 제> 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 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Ξ.												
											•												

1.•2. (현행과 같음)

세54조(벌칙)	
	,

1. ~ 2의2. (현행과 같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
	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지원
	<u>할 수 있다.</u>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	<u>&lt;삭 제&gt;</u>
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	
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u>한다.</u>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	
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	
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	
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u>다.</u>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	
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

전 중단은 대양여객운당사업사 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 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가산금·과오납금·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공단은 장수대상자의 행방 및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여야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삭 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 하여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 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 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 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획재	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연	락	처	(044) 215 - 5375